#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0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 송옥주·정성호·이병진

황명선 • 한정애 • 문진석

박 정・박홍근・부승찬

박해철 • 전용기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21)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.2%가,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.1%가 난임을 경험하 였음.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 임 경험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그러나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(연 간 3일)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, 현행법에 서는 다른 휴가·휴직과는 달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 급하고 있지 아니함.

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,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 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

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70조의2 신설 등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1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 법률 제 호

##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"제73조의2제1항"을 "제70조의2에 따른 난임휴직급여의 지급, 제73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의2(난임휴직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난임 휴직급여를 지급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난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난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난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
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난임휴직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난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. 이 경우 난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.

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난임휴직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난임휴직급여"로,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1조 및 제73조중 "육아휴직 급여"는 "난임휴직급여"로, "육아휴직 기간"은 "난임휴직급여"로, "육아휴직 기간"은 "난임휴직 기간"으로, "육이휴직"은 "난임휴직"으로 본다.

제80조제1항제3호 중 "육아휴직 급여 및"을 "육아휴직 급여, 난임휴직 급여 및"으로 한다.

제87조제1항 중 "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을 "육아휴직 급여·난임휴직급여·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으로 한다.

제90조제1항 중 "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을 "육아휴직급여·난임휴직급여·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으로 한다.

제107조제1항제4호 중 "육아기"를 "난임휴직급여, 육아기"로 한다.

제110조제1항제10호 중 "제74조제2항 및"을 "제74조제2항·제3항 및"으로 한다.

제112조제1항 중 "실업급여·육아휴직 급여 또는"을 "실업급여·육아 휴직 급여·난임휴직급여 또는"으로 한다.

제116조제1항제3호 중 "육아기"를 "난임휴직급여, 육아기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보험료) ① (생 략)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	제6조(보험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
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	
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 사업	
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	
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	
용에 충당한다. 다만, 실업급여	
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	
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,	
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	
급여의 지급, <u>제73조의2제1항</u> 에	<u>제70</u> 조의2에 따른
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	난임휴직급여의 지급, 제73조의
여의 지급, 제75조ㆍ제76조의2	2제1항
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	
및 제77조의4·제77조의9에 따	
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	
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	
(a) (a) 7h)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70조의2(난임휴직급여) ① 고용
	노동부장관은 '남녀고용평등
	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
	법률」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

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이상인 피보험자에게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난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난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난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난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 또는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「남녀 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에 따른 난임휴직 기간 중 근로계 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 제74조(준용) ① • ② (생 략)

<신 설>

제80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제80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-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 야 한다.

1. ~ 2의2. (생 략)

약 종료일부터 해당 난임휴직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난 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 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. 이 경 우 난임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 다.

제74조(준용) ①・② (현행과 같 음)

③ 난임휴직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0조제3항부터 제 5항까지와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난임휴직급여" 로,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와 제71조 및 제73조 중 "육아 휴직 급여"는 "난임휴직급여" 로, "육아휴직 기간"은 "난임휴 직 기간"으로, "육아휴직"은 "난임휴직"으로 본다.
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
3. <u>육아휴직 급여 및</u>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

4. ~ 7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제87조(심사와 재심사)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· 상실에 대한 확인,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 [이하 "원처분(原處分)등"이라한다]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 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,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의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다.

## ②・③ (생 략)

제90조(심사의 청구 등) ① 제87 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 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 자격의 취득·상실 확인에 대 한 심사의 청구는 「산업재해 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

3. 육아휴직 급여, 난임휴직급
여 및
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7조(심사와 재심사) ①
육아휴직 급여·난임휴직
급여·출산전후휴가 급여등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90조(심사의 청구 등) ①

근로복지공단(이하 "근로복지 공단"이라 한다)을, 제4장에 따른 릴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 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107조(소멸시효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  - 1. ~ 3. (생략)
  - 4.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

## ② (생 략)

제110조(자료 제공의 요청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토지・건물에 관한 자료, 국민연금・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

A 1
<u>육아</u>
휴직 급여 • 난임휴직급여 • 출
산전후휴가 급여등
② (현행과 같음)
제107조(소멸시효) ①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<u>난임휴직급여, 육아기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10조(자료 제공의 요청) ① -

- ·보험에 관한 자료,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1. ~ 9. (생략)
- 10. 제73조(<u>제74조제2항 및</u> 제7
  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)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 등의 지급 제한
- 11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- 제112조(포상금의 지급)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 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·위탁 및 <u>실업급여·육아</u> 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(생 략)
- 제116조(벌칙) ① 사업주와 공모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

	<u>.</u>
	1. ~ 9. (현행과 같음)
	10제74조제2항·제3항
	및
	11. (현행과 같음)
	②·③ (현행과 같음)
	112조(포상금의 지급) ①
,	
	실업급여 · 육
	아휴직 급여 · 난임휴직급여 또
•	느
•	<u>``</u>
	 ◎ /뒨레기 기호)
	② (현행과 같음)
제	116조(벌칙) ①

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 여, <u>육아기</u> 근로시간 단축 급 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
- 4. (생략)
- ② (생 략)

<u>.</u>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
<u>난임휴직급여, 육아기</u>
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